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,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허용하는 한편,

개발제한구역 내 축사, 사육장,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12.15. ~ 2022.1.25)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 중 “현금”을 “현금 또는 제3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청소년수련 시설	가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. 나)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바목가)를 준용한다. <u>다만 차목에 따른 자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----------------	---

별표 1 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머. <u>택시공영·공동차고지</u> 및 그 부대시설	가)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<u>택시공영차고지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택시공동차고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)</u> 만 해당한다. 나) 택시공동차고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여야 한다.

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(시·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·군·구 수의 2배 이내로 한다)는 시·도지사가 관할 시·군·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, 택시공동차고지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·공고한 시·군·구 배분계획에 따른다.

②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이거나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·자연도(自然圖) 1·2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.

다)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, 차고설비, 차고 부대시설, 충전소, 휴게실, 대기실,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해당한다.

라)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1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버. 수소연료공
급시설

가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,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,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,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소매점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규모, 시설의 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66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.

나)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	라) 축사, 사육장, 작물 재배사, 육묘장,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[개발제한구역(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.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]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. 다만,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, 사육장, 작물 재배사, 육묘장,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
--	--

별표 1 제5호 아목 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실외체육시설(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)	나) 부대시설은 탈의실, 세면장, 화장실,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,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,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허가받아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은 라)·마)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3호버목가)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부담금의 물납) ①·② (생략)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 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 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납부의무 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 의 가액과의 차액을 <u>현금</u> 으로 내야 한다. ④ (생략)	제38조(부담금의 물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현금 또는</u> <u>제3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납</u> <u>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·</u> <u>직불카드 등</u> ---.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